

영등포구의회
제200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마 속 란 의원 대표발의】



2017. 5. 16.

行 政 委 員 會
專 門 委 員 崔 光 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1. 경 과

의안 제207호로 2017년 5월 11일 마숙란 의원 외 5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17년 5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고령 및 핵가족의 증가로 인하여 외로이 죽음을 맞이하는 노령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고자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여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웰다잉(Well- Dying))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가. 웰다잉 문화조성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안 제2조)
- 나. 웰다잉 문화조성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 다. 웰다잉 문화조성 사업 추진에 대한 사항(안 제4조)
- 라.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 실시(안 제5조)
- 마.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안 제6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
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5조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다. 기 타: 입법예고(2017. 5 . 1 . ~ 5 . 8 .) 결과, 접수된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본 조례 제정안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따라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문화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 주요내용은

-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
- 안 제3조는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 안 제4조는 웰다잉 문화조성 추진사업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 안 제5조와 제6조에는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관련 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에 관한 내용을 각각 규정하고 있음.

○ 본 조례안은

구민의 생명권 등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사회적인 합의가 무엇보다 우선되는 영역인 연명의료결정 및 호스피스·완화 의료 취지를 고려하여 우리구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하려는 것으로, 죽음을 앞둔 사람의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고자 하는 공감대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입법체계나 자구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임.

참 고 자 료

1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사회적·문화적 토대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호스피스 이용의 기반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우선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